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허위영상물 반포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62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정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3.
3. 회 부 일 : 2024. 9. 24.

## II. 제안이유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을 처벌하고, 단순 소지·구입·저장 및 시청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복제가 용이하고 확산의 속도가 빨라 그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에 수년이 걸림에도 현행법상의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딥페이크 범죄의 구성요건에 반포할 목적을 삭제하고,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고,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 현행                                                                                                                                                                                                                                 | 개정안                                                                                                                                               |
|------------------------------------------------------------------------------------------------------------------------------------------------------------------------------------------------------------------------------------|---------------------------------------------------------------------------------------------------------------------------------------------------|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u>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u> 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u>사람의</u> -----<br>-----<br>-----<br>-----<br>-----<br>-----<br>-----<br>-----<br>-----<br>-----7년<br>-----7천만원<br>-----. |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                                                                                                                                                                                                      | ② -----<br>-----                                                                                                                                  |



| 현행                                                                                                                     | 개정안                                                                                                    |
|------------------------------------------------------------------------------------------------------------------------|--------------------------------------------------------------------------------------------------------|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u>1년</u>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br>-----<br>-----<br>-----<br>-----<br>---- <u>3년</u> -----<br>-----. |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u>3년</u>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br>-----<br>-----<br>-----<br>----- <u>5년</u> -----<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허위영상물이 실제로 가깝게 정교해지고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피해는 실제 촬영물과 차이가 없다는 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을 충족시키고 범죄를 예방·근절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측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의 경우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소지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sup>1)</sup>에는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 제14조의3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 및 법익 침해의 정도와 유사입법례인 「아동·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sup>2)</sup>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 유기징역을, 그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73

- 
- 2)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